

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9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김영국)

가. 제안이유

제302회 고성군의회(제1차 정례회) 2025. 6. 11. 원안 가결된 「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과 관련하여,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
- 2) 위탁대상: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사무 및 해상교통 편의시설
 - 가) 위 치: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일원(노선: 임포항 ~ 자란도)
 - 나) 시설규모: 선착장, 승선객 대기공간, 주차장 등
 - 다) 위치도(예상항로도)
- 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3년(예정: 2026. 2. ~ 2029. 1.)
- 4) 위탁방법: 도내 도선업체 중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- 5) 위탁사무 내용: 임포항~자란도 노선 소형선박 운영 전반

- 탑승인원 50여 명 규모의 선박 확보 및 정비 등 유지 관리
- 해상교통 편의시설(선착장, 승선객 대기공간, 주차장 등) 관리 지원
- 임포항~자란도 노선 운영
- 선장 및 선원 등 근무자 채용·교육·지도 감독
-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운영물품 수송 지원

6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선박 운항은 전문면허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나, 직영 시 인사 등으로 인해 인력 운용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
- 관광객 편의 제공과 운영비용 절감, 선박 운항의 효율성·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시행

라.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1) 변경내역

구분	당초	변경	증감액
소요예산	0천 원	1,416,185천 원	1,416,185천 원
정산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운영원가 지급 후 이용료 수입 세입처리	

- 변경사유: 초기 운영 단계임을 감안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위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	소요예산	인건비	유류비	기타	비 고
계	1,416,185	512,103	513,041	391,041	
2026년	459,543	166,175	166,478	126,890	
2027년	471,949	170,660	170,973	130,316	물가상승률 2.7% 반영
2028년	484,693	175,268	175,590	133,835	

3) 산출근거: 와도 해상택시 도입 타당성 및 해상운송 원가계산 용역(2024)

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 분		금 액(원)	비 고
계(운영원가+장기민간용선료)		459,543,459	
유류비		166,478,713	▲ 편도거리 2.2km, 운항횟수 8회
선원인건비		166,175,279	▲ 2개조(1개조 2인, 선장 및 기관장)
운 영 비	선박수리비	16,105,388	
	선용품비	1,481,851	
	임시용선료	739,572	▲ 국가보조항로 사례(소형선박 3.89톤)
	공제료	14,998,361	
	안전관리비	14,375,956	▲ 수입금의 2.9%
순원가(유류비+인건비+운영비)		380,355,120	
일반관리비 5%		19,017,756	▲ 순원가의 5%
이윤 10%		37,961,555	▲ 순원가+일반관리비(임시용선료 제외)의 10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437,334,431	
장기민간용선료		22,209,028	

※ 추정수입: 1,416,690천 원(3년)

- 적용단가(왕복기준) 10,000원 × 탑승인원(연간추정) 47,223명 × 3년

마.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바. 추진일정

- 1) 2025. 9.: 소형선박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
- 2) 2025. 10. ~ 12.: 소형선박 운영 위탁 사업자 선정
- 3) 2026. 2.: 해상교통 편의시설 조성사업 준공
- 4) 2026. 2. ~ 4.: 소형선박 시범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해상교통이 운항되지 않는 자란도에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변경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 검토

- 의회(변경)동의요청: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

구분	당초	변경안	사유
민간위탁 금액 (3년간 소요예산)		1,416,185천 원	(3년) 1,416,185천 원
정산 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운영원가 지급 후 이용료 수입 세입 처리	소요 예산산출 (정산 방법 변경)

-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: (2026년) 459,543천 원, (2027년) 471,949천 원, (2028년) 484,693천 원)
- 산출근거: 와도 해상택시 도입 타당성 및 해상운송 원가계산 용역 (2024)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 산출함.
- 관련 절차 이행 여부: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

○ 본 변경 동의안은 자란도 소형선박 운항의 효율성·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소요예산액이 20%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군의회의 변경 동의를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